

이 사 회 회 의 록

- 회의일시 : 2016년 12월 13일 (화) 오후 07시 00분
- 소집통보 : 2016년 12월 05일 (월)
- 회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탄방동) 비씨씨 킹덤
- 참석자 : 총 재적이사 11명 중 7명 참석
김**, 장**, 최**, 고**, 김**, 심**, 고**
- 불참자 : 오**, 임**, 이**, 장**
- 의 제 : 1.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6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
2.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
- 의결사항 : 1.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6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결의
2.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결의
- 보고사항 : 1.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의 기본재산취득 현황에 대한 사항
2.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의 상조회에 대한 사항

○ 회의진행 :

* 2016년 12월 13일(화요일) 오후7시 00분에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 비씨씨 킹덤뷔페 모임장에서 이사회를 개최, 법인사무국 종사자 김**을 이사회 서기로 임명하다. 김** 이사가 11인의 이사 중 7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의장 김** 대표이사가 정관 제28조에 의거 개최를 선언하다.

의 장 :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이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은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6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

산서 심의입니다.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전자우편을 통해 법인 및 산하시설의 예산 내역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서를 보면서 법인 및 산하시설 실무자분들의 부연 설명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의 추정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 * : 법인의 2016년 2차 추정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지정후원금이 감소한 것과 법인 산하시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과 관련된 기타잡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정후원금 3천5백2십만원, 비지정후원금 2천8백6십8만1천원, 전년도이월금 6억8천1백1십만8천9백5십8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2천7백5십1만9천4백7십원, 기타예금이자수입 5십7만3천2백6십2원, 기타잡수입 4백1십만8천3백1십원으로 총 7억7천7백1십9만1천원입니다. 세출은 급여 3천2백8십7만2천원, 제수당 3백2십7만6천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백1만2천3백4십원, 사회보험부담금 3백7만3천9백2십원, 기관운영비 4백만3천2백9십원, 회의비 1백1십만원, 여비 1만9천8백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9백1만3천2백원, 공공요금 4백3십3만7백5십원, 제세공과금 3백3십1만8천4백8십원, 기타운영비 7만4천원, 시설비 1백만원, 자산취득비 6억8천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9십5만1천7백원, 기타사업비 2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로템나무 5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포도나무 1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로템 1천만원, 잡지출 1백1십4만5천5백2십원으로 총 7억7천7백1십9만1천원입니다. 2016년 2차 추정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직원연수 및 업무관련교육 등이 취소되어 기타운영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시오.

고 * * : 법인의 2016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최 * * : 고*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법인의 2016년 2차 추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로댐나무주간보호센터 2016년 2차 추정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박 * * : 로댐나무주간보호센터 2016년 2차 추정 세입은 이용료사업수입 2천3백9만원, 시도보조금-운영비 7백1십6만원, 시도보조금-인건비 1억3천3백8십7만7천3백2십원, 기타보조금-시비 2백4십만원, 기타보조금-구비 2백4십만원, 지정후원금(공동모금회) 9십만원, 비지정후원금 1천4십3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5백만원, 전년도이월금(이용료) 9백3만3천8백5십8원, 전년도이월금(잡수입) 7백1십4만3천4백9십2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1천4백1십6만7천6백1십8원, 기타예금이자수입 1만4천7백1십2원, 기타잡수입 2백4십만원으로 총 2억1천8백1만7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본예산 편성시 주무관청이 정해준 2016년 인건비 보조금 가내시 예산액이 적게 편성되어 부족분을 기타잡수입에 계상한 것을 시도보조금(인건비)가 증가하여 기타잡수입을 감소시킨 것과 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선정되어 지정후원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은 급여 1억1천8백4십2만6천8백4십원, 제수당 2천8백3만4천5백1십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천1만7천7백원, 사회보험부담금 1천3백3만5천1백원, 기타후생경비 7십만1천원, 기관운영비 3십만원, 회의비 4십1만1천원, 여비 1십8만9천4백원, 수용비 및 수수료 2백2십만7천5십3원, 공공요금 3백1십7만1천6십원, 제세공과금 1백3십5만9천5백9십원, 차량비 3십8만9천원, 기타운영비 7십2만5천3십원, 시설비 5십만원, 자산취득비 3십5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0원, 연료비 1백9십6만4천6백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4백1십4만6천1백1십원, 교육재활사업비 7십8만4천3백9십원, 기타사업비 6십9만9천9십원, 식간식사사업비 4백8십1만7천7백1십원, 잡지출 0원, 예비비 2천5백7십8만5천8백1십7원으로 총 2억1천8백1만7천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신입직원이 이전직원보다 호봉이 낮아 인건비관련 지급항목이 감소한 것과 교자재 구입을 추후로 미루면서 교육재활사업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시오.

장 * * : 로댐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6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고 * * : 장**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로템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6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 2016년 2차 추경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박 * * :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6년 2차 추경 세입은 이용료사업수입 1천4백5십7만5천원, 시도보조금(운영비) 7백2십4만2천원, 시도보조금(인건비) 1억4천4백3십7만4천7백6십원, 기타보조금(종사자수당-시비) 2백4십만원, 기타보조금(종사자수당-구비) 2백4십만원, 지정후원금 1백2십만원, 비지정후원금 9십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1백만원, 전년도이월금(잡수입) 6십1만4천7백8십2원, 전년도이월금(이용료) 1천6백2십5만3천8백1십5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1천3백5십4만5천8백4십4원, 기타예금이자수입 1만3천1백8십5원, 기타잡수입 1백9십2만3백7십4원으로 총 2억6백4십3만9천7백6십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비지정후원금이 줄고, 지정후원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은 급여 1억5백1만4천원, 제수당 2천3백4십8만2천9백1십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천7십만1천2백1십원, 사회보험부담금 1천1백2십2만3천6백4십원, 기타후생경비 6십1만4천원, 기관운영비 4십5만원, 직책보조비 1백2십만원, 회의비 5십4만원, 여비 5십2만3천8백8십원, 수용비 및 수수료 1백4십4만7천3백1십1원, 공공요금 2백8십9만9천7백6십원, 제세공과금 5십6만9백6십원, 기타운영비 7십4만원, 시설비 0원, 자산취득비 2백3십5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십3만9천1백2십원, 연료비 1백7십만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5백1십7만1천3백3십원, 교육재활사업비 3백5십4만5천4백9십원, 기타사업비 2십만원, 식간식사업비 5백6십4만7천3백8십원, 잡지출 0원, 예비비 2천7백9십8만4천7백6십원으로 총 2억6백4십3만9천7백6십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냉장고와 세탁기와 같은 비품의 고장을 대비하여 책정해놓은 자산취득비를 사용하지 않아 자산취득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

시오.

심 * * :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6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장 * * : 심**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6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로템 2016년 2차 추경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맹 * * : 로템 2016년 2차 추경 세입은 입소비용수입 8천2백2십9만원, 국고보조금 1십2억3천8백3십7만6천8백4십원, 지정후원금 5천4백4십4만원, 비지정후원금 1천5백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1천만원, 전년도이월금 6천9백1십2만7천5백3십1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1천4백9십3만6천6백2십5원, 기타예금이자수입 7만8천4원, 기타잡수입 1천6백5십7만1천원으로 총 1십5억8십2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본예산 편성시 주무관청이 정해준 2016년 인건비 보조금 가내시 예산액이 적게 편성되어 부족분을 기타잡수입에 계상한 것을 시도보조금(인건비)가 증가하여 기타잡수입을 감소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은 급여 7억5십만6천원, 제수당 2억7천8백7십8만1천6십원, 일용잡급 3천4백9십8만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8천6십7만6천4십원, 사회보험부담금 8천3백7만5천3백2십원, 기타후생경비 8백3만2천2백원, 기관운영비 3십3만5천원, 직책보조비 0원, 회의비 1백8십5만6천1백원, 여비 4백6만9천8백5십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1백4십1만4천3백7원, 공공요금 2천1백8십3만9천4백1십원, 제세공과금 5백2십1만9천2백6십원, 차량비 3백1십만원, 기타운영비 1천9백6십만3천원, 시설비 2백9십7만원, 자산취득비 4백9십8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백1십5만1천5백원, 생계비 2천5백3십1만2

천1백6십원, 수용기관경비 6백2십8만1천6백9십원, 피복비 4백9십2만4백원, 의료비 4백1십3만6천원, 장의비 0원, 자활사업비 6만2천2백9십원, 특별급식비 4백2십6만4천5백3십원, 연료비 8백1십3만6천원, 의료재활사업비 7십만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천1백2십4만6천4백7십3원, 교육재활사업비 2백9십만9천8백원, 기타사업비 3천7십1만5천9백6십원, 잡지출 1백만원, 예비비 1억3천2백5십4만3천6백5십원으로 총 1십5억8십2만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입소비 사용이 수급생제급여로 제한됨에 따라 이전에 입소비로 편성해두었던 다른 세출예산항목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시오.

김 * * : 입소비 사용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시오.

유 * * : 입소비 사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수급생제급여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입소비로 부족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지출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비용에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입소비의 사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자부담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계속고용의 문제입니다.

고 * * : 아무쪼록 시설과 법인이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 * : 로템의 2016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고 * * : 최**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로템의 2016년 2차 추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으로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입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서를 보면서 법인 및 산하시설 실무자들의 부연 설명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의 본예산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 * : 법인의 2017년도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후원금 수입보다 인건비와 법인전출금 등 지출이 많아짐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정후원금 3천6백6십만원, 비지정후원금 2천8백5십6만원, 전년도이월금 6억8천1백6십4만6천4백9십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2천6십9만1천4백1십6원, 기타예금이자수입 5십2만2천9십4원, 기타잡수입 4백5십만원으로 총 7억7천2백5십2만원입니다. 세출은 급여 3천5백2십1만7천원, 제수당 3백5십1만6백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백2십2만7천3백4십원, 사회보험부담금 3백6십4만7천6백4십원, 기관운영비 1백만원, 회의비 1백6십만원, 여비 6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3백4십6만7천4백4십원, 공공요금 5백3십만원, 제세공과금 4백만원, 기타운영비 1백만원, 시설비 1백만원, 자산취득비 6억8천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7십4만4천2백원, 기타사업비 1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로템나무 2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포도나무 2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로템 1천만원, 잡지출 1백2십만5천7백8십원으로 총 7억7천2백5십2만입니다. 2017년 본예산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급여지급기준이 2016년도로 변경되고, 호봉이 상승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한 것과 법인 및 산하시설 직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진행하였던 사업들을 법인 사업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관운영비가 감소한 것, 그리고 최근 법인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짐에 따라 법인전출금을 축소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 * * : 그동안 법인의 후원금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았고, 이에 따라 전년도이월금(후원금)이 해마다 감소하였습니다. 법인의 재정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심 * * : 우리 법인은 지금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세입은 후원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세출은 법인 운영과 산하시설 지원 등에 최소한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인의 재무구조에서 최선의 대안은 후원금 모금활동과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세입을 늘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 장 : 이 문제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수익사업을 위한 기본재산 재정비라든지의 형태로 추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후 이사님들의 지원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 * * :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법인의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심 * * : 고**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법인의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로템나무주간보호센터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박 * * : 로템나무주간보호센터 2017년 본예산 세입은 이용료사업수입 2천4백만원, 시도보조금-운영비 7백4십만2천원, 시도보조금-인건비 1억2천9백6십3만6천원, 기타보조금-시비 2백4십만원, 기타보조금-구비 2백4십만원, 지정후원금(공동모금회) 0원, 비지정후원금 1천4십3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2백만원, 전년도이월금(이용료) 1천2백4십만7천7백7십원, 전년도이월금(잡수입) 4백5십만8천3백3십7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9백6십만5천4백3십원, 기타예금이자수입 1만7천4백6십3원, 기타잡수입 2백4십만원으로 총 2억7백2십만7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주무관청이 정해준 2017년 인건비 보조금 가내시 예산액이 적게 편성되어 시도보조금(인건비)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은 급여 1억1천6백1십1만8천9백3십원, 제수당 2천8백6십5만9백3십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천1십9만1천6백8십원,

사회보험부담금 1천3백2십2만8천원, 기타후생경비 1백6십1만원, 기관운영비 8십만원, 회의비 7십6만원, 여비 3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3백4십6만원, 공공요금 3백2십8만2천원, 제세공과금 2백7만원, 차량비 1백5만원, 기타운영비 2백8십9만2천원, 시설비 5십만원, 자산취득비 4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5십만원, 연료비 1백9십3만5천4백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6백6십만원, 교육재활사업비 2백4십만원, 기타사업비 8십만5백2십원, 식간식사사업비 5백5만7천5백4십원, 잡지출 0원, 예비비 0원으로 총 2억7백2십만7천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세입에서 인건비 가내시 보조금이 적게 책정됨에 따라 인건비 지급항목도 9개월분만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과 비품내용연수에 따라 사용기간이 경과하는 비품이 고장날 경우를 대비하여 자산취득비를 증가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요.

장 * * : 로댐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고 * * : 장**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로댐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박 * * :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7년 본예산 세입은 이용료사업수입 1천4백8십8만원, 시도보조금(운영비) 7백4십8만6천원, 시도보조금(인건비) 1억4천6십7만9천원, 기타보조금(종사자수당-시비) 2백4십만원, 기타보조금(종사자수당-구비) 2백4십만원, 지정후원금 1백2십만원, 비지정후원금 9십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2백만원, 전년도이월금(잡수입) 0원, 전년도이월금(이용료) 2천4십만5천7백6십9

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7백5십7만9천원, 기타예금이자수입 1만7천2백3십1원, 기타잡수입 1백9십2만원으로 총 2억1백8십6만7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주무관청이 정해준 2017년 인건비 보조금 가내시 예산액이 적게 편성되어 시도보조금(인건비)이 감소한 것과 교육자재 구입으로 전년도이월금(후원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은 급여 9천7백6십5만4천6백4십원, 제수당 2천6백2십7만1천3백8십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천1백1십6만8천7백8십원, 사회보험부담금 1천1백7십3만4천2백원, 기타후생경비 1백2십6만원, 기관운영비 6십만원, 직책보조비 1백2십만원, 회의비 1백3십만원, 여비 1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2백2십8만7천원, 공공요금 2백9십7만원, 제세공과금 6십8만원, 기타운영비 2백8십8만원, 시설비 1천1십만원, 자산취득비 8백7십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십만원, 연료비 2백만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7백만6천원, 교육재활사업비 2백9십만원, 기타사업비 3십4만원, 식간식사업비 7백9십2만8천원, 잡지출 3만7천원, 예비비 1백만원으로 총 2억1백8십6만7천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세입에서 인건비 가내시 보조금이 적게 책정됨에 따라 인건비 지급항목도 9개월분만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과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 시설비 관련 항목을 증가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시오.

최 * * :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고 * * : 최**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로템 본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맹 * * : 로템 2017년 본예산 세입은 입소비용수입 7천3백4십4만원, 국고보조금

1십3억8천5백1십5만5천5백원, 지정 후원금 1천4백7십7만원, 비지정 후원금 1천8백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1천만원, 전년도이월금 9천5백6십8만7천8백2십5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3천7백9십1만5천6백8십5원, 기타예금이자수입 1십2만9백9십원, 기타잡수입 1천8백2십만원으로 총 1십6억5천3백2십9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기능보강사업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과 각종 외부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 지정후원금이 감소한 것, 그리고 입소비 사용 제한으로 전년도이월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은 급여 7억2천5백1십1만8천원, 제수당 2억8천7백9십1만3천9백1십원, 일용잡급 3천6백3십만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8천3백3십7만6천5백4십원, 사회보험부담금 9천5백9십8만7천3백8십원, 기타후생경비 4백8십만원, 기관운영비 5십만원, 회의비 5십만원, 여비 1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1십9만7천8백3십원, 공공요금 2천3백2십9만9천2백원, 제세공과금 5백6십9만원, 차량비 2백5십만원, 기타운영비 1천7백2십6만원, 시설비 9천1백4십6만원, 자산취득비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3백4십6만원, 생계비 4천7백3십6만4천원, 수용기관경비 5백3십3만5천8백9십원, 피복비 2백7십5만7천2백6십원, 의료비 4백6십만원, 장의비 3백만원, 자활사업비 0원, 특별급식비 1천6백4십만1천3백8십원, 연료비 9백만원, 의료재활사업비 3십만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6백5십만원, 교육재활사업비 2백7십만원, 기타사업비 1천5백7십7만원, 잡지출 1억3천9백1십9만8천6백1십원, 예비비 0원으로 총 1십6억5천3백2십9만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기능보강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가 증가한 것과 입소비를 수급생제급여로만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계비와 특별급식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 * * : 로템의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고 * * : 심**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로템의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안내해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른 의결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전원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김** 이사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 * : 첫 번째 보고사항은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의 기본재산취득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법인은 2016년 10월 6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증개로 대전 유성구 계산동 754-6,7번지에 위치한 484.4제곱미터의 나대지를 5억2천5백6십만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자의 신뢰문제와 대상물에 대한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계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기본재산취득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알선과 교차로를 통한 매물 검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장 * * : 계약을 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 * * : 이사회의 의결 후 계약서 작성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과 만나기로 하였으나 해당 나대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기 때문에 다른 매수자와 먼저 계약을 하고 있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도인을 볼 수가 없었고, 그곳에 있었던 다른 매수자를 만나 매매대금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중개업자와 매도인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이전에 제시하였던 매매대금보다 더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 * * : 이사회 의결사항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을 들어본 결과 부동산 대상물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안정적이고, 법인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 장 :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김** 이사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 * :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의 상조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법인의 산하시설들은 각각의 상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원 후생복지와 경조사 지원 등의 문제로 법인 차원에서 상조회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직원 36명의 찬성으로 2017년 01월에 법인 상조회를 창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법인 상조회 규칙은 회의를 통해 제정할 예정입니다.

고 * * : 산하시설 상조회 만으로도 직원 후생복지와 경조사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에 대한 범위 및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별도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 * : 법인의 2017년 본예산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최근 이러한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변의 지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시설에서 벤치마킹하여 법인 상조회를 통한 지원을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 * * : 상조회는 직원의, 직원을 위한, 직원에 의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상조회가 법인 내에 건전하게 정립될 수 있게 법인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전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2016년 12월 13일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09시 00분이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2016년 12월 13일

대표이사 김 * * ①

이 사 최 * * ①

이 사 김 * * ①

이 사 장 * * ①

이 사 심 * * ①

이 사 고 * * ①

이 사 고 * * ①